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2. 20 선고 2022가단302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호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박상길, 박준오, 전민주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는 원고에게 64,426,520원 및 그 중 34,485,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29,9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2021. 8. 6. 접수 제10868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같은 등기과 2017. 1. 5. 접수 제113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사실인정

가. 주식회사 D와 피고 B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피고 B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13차2831호)을 신청하여 '피고 B는 D에 34,4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8. 29.에 확정되었다.

2) 그리고 D는 피고 B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940호)을 제기하여 2020. 9. 18. '피고 B는 D에 2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D와 피고 B 모두 항소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5637호) 2022. 1. 20. 항소기각판결이 있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그리고 피고 B는 D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단21952호)을 제기하여 2023. 5. 11. 'D는 피고 B에게 45,557,490원 및 이에 대한 2022.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 B는 2022. 2. 10. D를 피공탁자로 이 사건 확정판결원리금 41,970,589원을 공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2년금제587호).

나. 원고의 채권양수

원고는 2022. 6. 28.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22. 8. 8. D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과 확정판결채권을 양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수도’라 한다), 2022. 8. 9. 피고 B에게 양수도가 통지되었다.

다. 피고들의 사이의 부동산 매매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기과, ① 2017. 1. 5. 접수 제1135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② 2021. 8. 6. 접수 제10868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과 확정판결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어 위 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위 인정사실과 같으나, D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인 원고가 D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과 확정판결채권을 양수하는 것은 원고와 D 사이에

이해가 충돌되는 계약인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전에 원고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그리고 이 사건 확정판결채권은 피고 B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은 피고 B의 채무면탈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거나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양수도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위 제2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양수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 B를 대위할 수 없어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가사 원고에게 B에 대한 이 사건 양수도채권이 존재하더라도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명의신탁이라거나, 피고 B가 무자력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혜

별지